

최근의 국내 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검찰의 불법 감청에 관한 의혹제기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다

대법원 2005. 1. 14자 판결 (2001다28619)

사실개요

대법원 제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999년 7월 20일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성원들로서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이었던 원고들이 조선일보사와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감청 등 그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사실 중 검찰의 불법 감청에 관한 의혹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

므로, 이는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들은 조선일보가 지난 1999년 7월 31일자 조선일보 서울지역 가판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제하로 원고들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수사 과정 중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전 조폐공사 사장과와의 통화내용에 대해 불법 감청을 한 후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감청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게재하자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및 검사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겼고, 일반 독자로 하여금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안겨주어 검찰 구성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 7집 295~307면 참조).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항변을 이 사건 사실에 적시된 사실 및 정황만으로는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사실의 전체 취지가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제되는 중요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바 있다(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 9집 96~107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1다28619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 1. 이 ○ ○
- 2. 이 △ △
- 3. 주 ○ ○
- 4. 길 ○ ○
- 5. 윤 ○ ○
- 6. 김 ○ ○
- 7. 조 ○ ○
- 8. 최 ○ ○
- 9. 한 ○ ○
- 10. 김 △ △
- 11. 이 □ □
- 12. 신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우 식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 2. 정 ○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조선일보사 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1. 4. 19. 선고
2000나9859 판결

판 결 선 고 : 2005. 1. 14.

주 문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피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상고이유보충서 II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들은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로서 1999. 7. 20.부터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성원들이었는데, 위 수사 본부에서 원고 이○○는 본부장, 원고 이△△은 주임 검사, 나머지 원고들은 각 수사검사의 직책을 수행하였으며, 한편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의 발행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정○○은 피고 회사의 논설 위원이다.

(2)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이던 진○○은 1999. 6.

7. 기자들에게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 발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권과 일반 시민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며, 그 보도를 접한 노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함에 따라 대검찰청은 그 진상 조사를 위하여 위 수사본부를 구성하였다.

(3) 원고들은 1999. 7. 21. 위 사건 수사에 착수하여 진○○와 전 조폐공사 사장 강○○의 집과 대검찰청 공안부에 대한 압수 수색과 진○○와 그 가족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하고, 기타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쳤는데, 그 수사 결과 위 사건은 '진○○가 구조 조정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는 선례를 만들어 업적을 쌓을 목적으로 행한 1인극'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들은 1999. 7. 30. 진○○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위 수사를 종결하였다.

(4) 그런데 위 수사 과정에서 진○○가 강○○에게 전화를 하여 '집 전화로 통화하면 수사기관에 추적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기를 보내겠다'고 제안한 다음 휴대전화기를 강○○에게 전하였고, 진○○와 강○○이 그 휴대전화기로 수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

(5) 한편, 원고 이○○ 등은 위 수사본부에서 위 수사 내용과 관련된 일문일답식의 브리핑을 가끔 하었는데, 1999. 7. 27. 오후에 진○○가 강○○에게 휴대전화기를 전달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다고 처음으로 공개하였고, 1999. 7. 29. 오전에는 강○○의 진술임을 전제로 진○○가 강○○에게 "강사장, 우리 딱 한 번 만난 거야... 알았지", "우리가 5월에 한 번 만난 것밖에 없지", "당신이 나와 통화한 것은 범죄신고 차원이 아니냐", "구조 조정은 조폐공사 스스로 한 것인데 내가 뭘 알겠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쑥추기를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브리핑

을 하였으며, 그 때 그 통화 내용이 감청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위 통화 내용은 감청이나 비화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강○○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청취한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6) 위 브리핑 관련 기사를 취재한 피고 회사 소속 이○○ 기자는 '검찰이 감청이 아닌 강씨 진술로 밝혀진 것이라는 전제를 달고 위 브리핑을 하였고, 그 브리핑 전달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던 통화 내용을 그 다음날에 상세히 공개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러한 취지의 기사가 1999. 7. 30.자 조선일보에 보도되었다.

(7) 피고 정○○은 위 보도 기사와 기타 다른 언론 보도를 참작하여 '검찰의 감청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원심판결 판시 별지 제1 사설(이하 '이 사건 제1 사설'이라 한다)의 내용에 상응하는 사설을 쓴 다음 피고 회사 내부의 상의 또는 보고 절차, 편집 절차를 거쳐, 1999. 7. 30. 18:00경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1999. 7. 31.자 조선일보 서울지역 가판(街版)에 이 사건 제1 사설과 같은 내용의 사설을 실어 배포하였다.

(8) 그런데 원고 이○○가 위 신문을 보고 피고 회사 소속 서울지방검찰청 법조 출입 기자에게 위 사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자, 피고 정○○은 다시 피고 회사 내부의 상의 절차를 거쳐, 다음 그 사설의 제목을 '휴대폰도 도청되나'로 바꾸고 내용을 일부 고쳐 원심판결 판시 별지 제2 사설(이하 '이 사건 제2 사설'이라 한다)의 내용에 상응하는 사설을 쓴 다음 내부 편집 절차를 거쳐, 1999. 7. 30. 23:00경 1999. 7. 31.자 조선일보에 이 사건 제2 사설과 같은 내용의 사설을 실어 배포하였다.

나. 피해자의 특정 여부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

드시 사람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한편, 언론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보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보도가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보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보도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각 사실의 문면에 의하면, 문제된 각 감청행위의 주체로 '검찰' 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원고들을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위 각 사실 중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진○○와 강○○ 사이의 휴대전화기 통화 내용을 검찰이 감청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그 판단은 검찰이 파업유도 사건을 조사, 발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들을 전제로 한 것인바, 당시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검사인 원고들과 원고들의 지휘를 받는 검찰 직원들뿐이었으므로 원고들의 업무를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고들의 직역과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파업유도 사건 관련 기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반 독자들도 쉽게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들은 위 각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배포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특정 또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 여부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의견 또는 논평이라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신문 등 언론 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 인정 사실에 터 잡아, ① 피고가 이 사건 제2 사실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든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 사설은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하였다든 내용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그 내용 중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② 이 사건 제1 사설은 ‘검찰의 감청 의혹’이라는 제목 아래, 첫 문단에서 검찰이 공개한 진○○와 강○○ 간의 휴대폰 통화내용이 감청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적시한 뒤,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근거로서, 검찰이 전날 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 라던 통화내용을 공개하고, 감청이 아님을 애써 강조하였으며, 검찰이 공개한 내용은 진○○와 강○○이 주고받은 대화체로 되어 있고, 한 달도 더 넘은 시점부터 약 20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나눈 비밀통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바, 비록 위 사설 중에는 통화 내용의 공개가 이례적이라든가 감청이 아님을 강조한 점이 석연치 않고 비밀통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된 것이 자연스럽게 못하다고 적시한 부분 등 의견 또는 논평이라고 보아야 할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 독자가 사설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위 사설의 제목과 앞서와 같은 사실들을 포함한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사설은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그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든 취지의 사실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위 사설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그 사설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보면, 위 사설은 비록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설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고 사실상 타인의 명예

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 또는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위법성의 조각 여부

(1) 원심은, ‘이 사건 제1 사설에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으로서 내용이 진실하므로 위 보도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신문 또는 방송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 또는 방송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판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설은 검찰이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던 휴대전화 감청을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서 그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것이나, 나아가 위 사설 중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하였다거나 불법 감청을 한 다음 감청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그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든 점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함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또한 ‘이 사건 제1 사설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피고들은 피고 회사 및 다른 언론사들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 보도 사실에 터 잡아서 위 사설 내용을 작성한 다음 신문에 게재하여 배포하였고, 위 사설은 평가, 비판, 촉구 따위의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한 것인데,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의 증거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도,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실제 진○○와 강○○의 대화를 감청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원고들에게 감청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원고들의 해명을 듣는 등의 다른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선일보의 관련 보도나 다른 언론사들의 관련 보도를 사실로 잘못 알고서,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한 다음 그 감청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감청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은 위 사실을 작성하여 그대로 신문에 게재하여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적시된 사실 및 정황만으로는 원고들이 불법 감청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사실의 전체 취지가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제되는 중요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

(2)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

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등 참조).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1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사실의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나 원심이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특히 검찰 등 국가기관

의 수사과정에서의 감청 등 그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사설의 내용은, 그 첫머리에서 “검찰이 공개한 진○○ 전 대검공안부장과 강○○ 전 조폐공사 사장의 휴대폰 통화내역이 감청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검찰의 불법 감청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다음, 이어서 그와 같이 의혹이 제기되는 근거로, ① 검찰이 전날까지도 ‘개인 프라이버시’ 라던 통화내용을 공개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 ② 검찰이 통화내용을 공개하면서 그것이 감청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애써 강조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점, ③ 검찰이 공개한 내용이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체로 되어 있는 점, ④ 한 달도 더 넘은 시점부터 약 20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나눈 비밀통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않다는 점 등의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면서,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추가해명을 요청하였으며, 나아가 도청과 감청은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 누구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이미 보급대수 1,000만 대를 넘어서 국민의 생필품이 된 ‘휴대폰’마저 도청된다면 국민생활은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밝히면서 “도청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수사기관의 감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사설 중 검찰의 불법 감청에 관한 의혹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

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주심 대법관 변재승

대법관 고현철

□

판결 2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에 의한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2005. 2. 3.자 결정 (2004헌가8)

사실개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희 재판관)는 2005년 2월 3일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에 의한 외국 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에 대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에 의한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배포라는 의사표현행위 전에 표현물을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표현행위의 허용여부를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의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검열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1. 5. 24. 법 개정시에 그 근거규정이 공연법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관련조항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인정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업무를 수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개정 전 공연법에 의거 설치되고 있던 것으로서 위 현재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결정에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의 운영주체로서 행정기관성 여부를 판단하였던 바로 그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동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검열과 관련해서는 그 조직과 구성면에서 행정권의 성격을 가진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청신청인 손○○은 동생과 공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1999. 12. 초순경부터 2000. 11.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빌딩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마존”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음란·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삭제되지 아니한 외국 영화 DVD 600점을 우송받아 외국의 비디오물을

수입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통하거나 유통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되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00고단8228).

이후 제청신청인은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01노167), 대법원에 상고하여 소송계속중(2001도3495),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2001초472), 대법원은 동법 제16조 제1항 본문 중 외국비디오물에 관한 부분, 제29조 제1항 제4호 중 제16조 제1항의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부분, 제30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2호의 수입비디오물의 유통 또는 보관한 자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됨을 인정하여, 2004. 4. 13.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결 정 문

제청법원 : 대법원(2004. 4. 13. 2001초472 위헌제청신청)

당해사건 : 대법원 2001도349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 중 외국비디오물에 관한 부분, 제29조 제1항 제4호 중 제16조 제1항의 외국비디오물의 수입 부분, 제30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2호의 수입비디오물을 유통 또는 보관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 손○○은 동생인 청구의 손△△과 공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1999. 12. 초순경부터 2000. 11.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빌딩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마존”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음란·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삭제되지 아니한 외국영화 DVD 600점을 우송받아 외국의 비디오물을 수입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통하거나 유통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되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00고단8228).

(2) 제청신청인은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01노167), 대법원에 상고하여 소송계속중(2001도3495),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2001초472), 대법원은 동법 제16조 제1항 본문 중 외국비디오물에 관한 부분, 제29조 제1항 제4호 중 제16조 제1항의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부분, 제30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2호의 수입비디오물의 유통 또는 보관한 자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됨을 인정하여, 2004. 4. 13.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본문 중 외국비디오물에 관한 부분, 제29조 제1항 제4호 중 제16조 제1항의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부분, 제30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2호의 수입비디오물의 유통 또는 보관한 자 부분이며,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법 제16조(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수입)

①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음반의 원판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음반"이라 한다)·비디오물(비디오물의 원판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비디오물"이라 한다) 또는 게임물(게임물의 원판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게임물"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생략

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외국음반·외국비디오물 또는 외국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4.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음반·외국비디오물 또는 외국게임물을 수입 또는 제작한 자

5.~10. 생략

② 생략

법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생략

5. 제24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유통·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 등을 하거나 유통·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 등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법 제24조(폐쇄 및 수거조치등) ①, ② 생략

③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제작 또는 반입된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

3.~5. 생략

④~⑥ 생략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근거규정은 별지로 첨부.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1) 원심판결은 제청신청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하고, 또한 등급분류도 받지 아니한 외국비디오물을 유통 및 유통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는 제청신청인의 상고에 따른 이 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

(2)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비디오물은 의사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수입 및 유통 등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법 제1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수입추천제도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법 제16조 제5항의 수입추천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외국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수입·유통 등을 금지하고,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비디오물을 수입·유통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나. 문화관광부장관의 의견

(1) 영화는 시청각을 표현수단으로 하는 영상매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단 상영되고 나면 그 자극이나 충격이 매우 강하게 그리고 직접 전달되어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비디오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졌고, 일단 소비자에게 보급되고 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마저 없으므로 영화·비디오를 상영 또는 보급하기 이전에 심사·규제할 필요가 있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각 전문분야별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관·단체에서 선정한 사람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에서 행정권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법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율성이 보장된 민간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율적 민간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비디오의 수입추천제도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라는 사전검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검열금지에 관한 헌법규정과 검열의 개념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언론에 대한 검열금지원칙을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명문으로 언론에 대한 검열금지원칙을 선언하면서,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1996. 10. 4. 선고 93헌가13등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검열제도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와 더불어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검열개념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밝힌 검열의 개념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판례집 8-2, 212, 222-223)."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소를 사전검열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위 결정에서 제시된 위와 같은 기준은 그 후 검열이 문제된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들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었으며, 헌재 2001. 8. 30. 선고 2000헌

가9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사건에서 위 기준에 입각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를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게 하는 영화진흥법상의 '영화등급분류보류제도'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나. 수입추천제도의 연혁 및 내용

(1) 입법연혁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1991. 3. 8. 법률 제4351호에 의해 제정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던 외국비디오물 수입허가제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외국비디오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거나 이를 국내에서 판매·배포·대여 등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법 제24조 제1항 제2호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995. 12. 6. 법률 제5016호에 의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되면서, 문화부장관에 의한 수입허가제도는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수입추천제도로 바뀌었고, 이 때부터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외국비디오물의 유통에 대해서도 별도의 형사처벌이 부과되었다.

1997. 4. 10.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수입추천의 주체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바뀌었다가, 1999. 2. 8. 법률 제5925호에 의해 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해, 수입추천의 주체는 다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바뀌었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하는 행위와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외국비디오물의 유통 및 유통목적 보관행위 등에 대

해 부과하는 형벌도 강화되었다. 1999. 2. 8. 법률 제5925호에 의해 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수입추천제도 관련조항들이 바로 제청신청법원의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다(외국비디오물에 대한 수입추천제도는 2001. 5. 2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전문개정시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2) 수입추천제도의 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비디오물에 대하여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하고, 이 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수입추천신청의 대상이 된 당해 외국비디오물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및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입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당해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비디오물에 대한 수입추천제도의 연혁과 수입추천불가 판정의 기준에 관한 관련조항(법 제16조 제5항)을 살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유통을 위한 외국비디오물의 수입 이전에 외국비디오물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외국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폭력·음란의 과도한 묘사로부터 청소년 및 공서양속을 보호하고, 기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외국비디오물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수입추천제도가 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외국비디오물의 수입과 언론·출판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한다.

“음반 및 비디오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러한 작용을 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3. 5. 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284 ;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395, 401 참조).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배포행위도 의사형성적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의사의 표현·전파 형식의 하나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배포행위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고, 이러한 영역에 대한 사전검열은 우리나라 헌법이 금지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수입추천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가,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소를 갖춘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법 제16조 제1항은 외국에서 제작된 비디오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입하고자 하는 비디오물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수입추천할 수 없는 비디오물에

관한 내용상의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조항과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외국비디오물이라는 표현물이 국내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수입추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유통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나) 헌법상의 검열금지원칙은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검열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결정에서 영화진흥법(1999. 2. 8. 법률 제592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던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영화에 대한 심의 및 상영등급분류업무를 담당하고 등급분류보류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에도, 비록 이전의 공연윤리위원회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와는 달리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보고 내지 통보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공연법 제18조 제1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공연법 제18조 제2항, 공연법시행령 제22조),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공연법 제30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비록 그의 심의 및 등급분류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라 할지라도(공연법 제23조), 그것이 검열기관인가 여

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심의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단지 심의절차와 그 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심의절차에 요구되는 당연한 전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하여 검열절차가 입법의 형태로 계획되고 의도된 이상, 비록 검열기관을 민간인들로 구성하고 그 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영화진흥법이 정한 등급분류보류제도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라는 요건도 충족시킨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1. 5. 24. 법 개정시에 그 근거규정이 공연법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로 바뀌고 관련조항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인정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업무를 수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개정전 공연법에 의거 설치되고 있던 것으로서 위 헌재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결정에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의 운영주체로서 행정기관성 여부를 판단하였던 바로 그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검열과 관련하여서는 그 조직과 구성면에서 행정권의 성격을 가진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수입추천제도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에 관해 본다.

법에 의하면, 외국비디오물이 유통을 위해 수입되기 위해서는 그 수입 이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고(법 제16조 제1항), 외국비디오물의 내용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수입추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법 제16조 제5항), 추천을 받지 않고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하거나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외국비디오물을 유통하거나 유통목적으로 보관하였을 경우에는 각 형사별이 부과되고(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및 제30조 제5호), 추천을 받지 않고 수입된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이러한 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외국비디오물의 내용이 법 및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비디오물 수입업자가 자진해서 문제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한 당해 외국비디오물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의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 비록 그 외형적인 형태가 '수입추천'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는 한 외국비디오물을 통한 의사표현이 금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수입추천제도는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그 절차를 관철하는 수단으로서 형사처벌규정 및 강제수거·폐기규정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소도 구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3)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배포라는 의사표현행위전에 표현물을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표현행위의 허용여부를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의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송인준의 합헌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송인준의 합헌의견

나는 위 다수의견에서 언급하고 있는 헌재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영상물에 대한 사전검증절차의 필요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판례집 13-2, 134).

“무릇,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여 그 표현으로 인한 해악이 해소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국가의 개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언론·출판의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은 원칙적으로 2차적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표현이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표현은 일단 표출되면 그 해악이 대립되는 사상의 자유경쟁에 의한다 하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니

고 있다. 바로 이러한 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1차적인 것으로 용인된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이러한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표현을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이라고 정의되는 음란표현은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할 수 없는 표현의 일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떠한 표현이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호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표현은 사전에 적절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여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영화는 시청각을 표현수단으로 하는 영상매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단 상영되고 나면 그 자극이나 충격이 매우 강하게 그리고 직접 전달되어 영향력이 아주 크다. 그뿐 아니라, 비디오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일단 소비자에게 보급되고 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마저 없다. 그러므로 영화를 상영 또는 보급하기 이전에 심사·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특히 청소년이 음란, 폭력 등 영화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절실함도 크다.

영화에 대하여 이미 다단계의 등급을 분류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으므로 등급분류보류

제도는 청소년보호라는 공익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법령상의 규제와 현장에서의 실행 사이에 괴리가 큰 현실을 간과한 것으로서, 더욱이 현재와 같이 동일한 영화관에서 여러 등급의 영화가 동시에 상영되는 제도하에서는 청소년보호라는 공익은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비디오 기기가 이미 광범하게 보급되고, 거의 모든 영화가 다시 비디오물로 재생되는 현실에서 영상매체로서의 비디오물 또한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라는 면에서의 사전검증절차 필요성은 영화에 못지않음은 말할 나위도 없고,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볼 때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검증절차의 필요성은 오히려 영화의 그것에 비해 더 크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의 경우에는 극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상영되므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받는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도록 규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선전물의 배포·게시 또한 위 제한상영관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단계에서의 이용자별 출입제한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디오물은 극장에서만 상영될 수 있는 영화와는 달리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단계에서의 관리가 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영화보다도 상영·보급 이전 단계에서의 내용에 대한 사전검증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외국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내용과 관련하여 제작에 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적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외국비디오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국내의 청소년들에게 유포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인터넷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하여 그 유포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속화 되었는데, 불법적 내용의 비디오물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경우에 그 해악이 정말 심대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최근 불법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연예인 관련 비밀과일 사건이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성격에 관하여도 나는 위에서 언급한 현재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결정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각 전문분야별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관·단체에서 선정한 사람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의 형식적 위촉으로 선임되는 점, 과거와 달리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의무 및 문화관광부장관의 위원장·부위원장 승인제도가 없다는 점, 위원장·부위원장을 위원회가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가 법정되어 있으며,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는 점, 위원회에 대한 국고보조가 20%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과거 공연윤리위원회나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의 회에 대하여 행정기관성을 인정하여 검열기관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행정기관적 색채를 불식하고 출범한 것으로서 행정권과는 독립된 민간 자율기관”이라고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비디오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제도는 영상물에 대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사전검증절차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견이 검열금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 검열을

정부입장의 옹호 내지 홍보수단으로 악용하던 데 대한 반응으로 일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표출된 후의 교정이 불가능한 해악으로부터 건전한 사회윤리의식과 청소년을 보호하여 국가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가치혼돈시대의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서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

재판장 재판관 윤 영 철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 효 중
 재판관 김 경 일
 재판관 송 인 준
 재판관 전 효 숙
 재판관 이 상 경
 주 심 재판관 주 선 회

〈별 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근거규정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사건 당시 공연법에 의해 설치되었고, 따라서 직무범위에 관하여도 공연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공연법(1999. 2. 8. 법률 제592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7조(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의 공공성 및 윤리성을 유지함과 아울러 연소자 관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영상·청소년·법률·교육·언론 등의 분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가 영화·비디오 등 공연 및 게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한 15인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1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4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상물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가 상영등급을 분류한 영상물 등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이를 등급분류 등 관련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상물관련업체 등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상물 수입·제작자 등 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회의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할 수 있다.

제30조(지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판결 3

신속 보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 취재원의 진술내용을 믿어 보도한 것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9.자 판결 (2003가합46616)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004년 12월 29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동아일보사와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가 동아일보 2003년 6월 14일자 1면 『“박지원 씨에 2억 줬다”』라는 제목과 『김○○ 씨 ‘관광협회장 임명에 도움 대가’ 진술』, 『검찰 월드컵 회장권 수사 … 김씨 영장 청구』라는 중간제목

의 기사에서 월드컵 회장사업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이 원고가 문화관광부장관 재직 당시 김○○ 관광협회중앙회장에게서 2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사실무근이라며 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김△△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하였는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전 원고에 대한 그러한 의혹제기가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해 수사가 바로 진행되지 않아 김△△의 진술내용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김△△가 원고에게 2억원을

건네주기 위해 돈을 마련해 주었다는 김○○에 대해서 따로 취재하지 않은 사정, 이 사건 기사의 가장 중요한 취재원인 김△△ 자신이 월드컵 휘장사업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있었고, 김△△의 검찰에서의 진술 그 자체도 진술을 할 수록 로비 대상이 점점 확대됨은 물론 그 일관성도 없어졌던 사정, 그런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김○○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제목과 본문 내용 등에서 김○○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처럼 보도한 사정, 당시는 대북송금사건에 원고가 깊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원고가 월드컵 휘장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일반 독자들이 쉽게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상황이었던 사정, 김○○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김△△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 사정 등 이 사건 기사의 취재경위, 취재원인 김△△의 진술내용 및 그 신빙성, 취재 당시 원고의 상황,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의 진술을 믿어 보도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과 함께 원고가 김○○ 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명하였다.

판 결 문

사 권 : 2003가합46616 손해배상(기)
 원 고 : 박 지 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 정
 담당변호사 김 주 원
 피 고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김 재 호

2. 이 ○ ○

3. 이 △ △

4. 이 □ □

피고들의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미디어센터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이 병 삼

변 론 종 결 : 2004. 12. 1.

판 결 선 고 : 2004. 12. 29.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8.부터 2004.

12. 29.까지는 연 5%의, 200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 후
첫 번째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제2면 우측 상단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3.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그
의무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씩의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한다.

5.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3/4은 피고들이 각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억원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동
 아일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사’ 라고 한다)는 별
 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동아일보 제1면 우측 상단에
 가로 3단, 세로 16cm의 크기로 게재하라. 피고 동아
 일보사는 원고에게 이 판결선고일로부터 위 정정보
 도문 게재일까지 1일 1,000만원씩의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을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7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8년경부터 2003. 2. 24.까지 문화관광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 동아일보는 일간지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법인이며, 피고 이○○, 이△△, 이□□은 아래에서 보는 동아일보 2003. 6. 14.자 기사를 작성한 피고 동아일보사 소속 기자들이다.

나. 동아일보 2003. 6. 14.자 기사

동아일보는 2003. 6. 14.자 1면 우측 상단에 “박지원씨에 2억 줬다”라는 제목과 “김○○씨 ‘관광협회장 임명에 도움 대가’ 진술”, “검찰 월드컵 회장권 수사 … 김씨 영장 청구”라는 중간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2002 한일월드컵 축구대회 회장사업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관광부 장관 재직 당시에 김○○ 관광협회중앙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박 장관이 2000년 5월경 초기 회장사업권자인 CPP코리아 회장이던 김씨에게서 “관광협회중앙회장으로 임명되는 데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CPP코리아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현금 2억원을 받았다는 관련자의 진술 및 정황을 확보했다. 김 회장이 당시 홍콩

에서 열린 태평양아시아관광협회(PATA)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직후 박 장관에게 총회결과를 보고하러 가면서 김△△ 전 CPP코리아 대표(38)에게서 받은 2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13일 김 회장에 대해 CPP코리아 등으로부터 정관계 로비 등의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원이 박 전 장관에게 전달됐으며 다른 2억원이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권 전 고문은 최근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돈을 받지 않았으며 김○○씨를 관광협회중앙회장이 되도록 한 사람은 박지원씨”라고 말했다. 검찰은 월드컵 회장상품 생산업체인 G&B월드와 회장사업권자였던 코오롱TNS가 각각 월드컵 홍보관 사업권을 획득하고 CPP코리아로부터 회장사업권을 이전받기 위해 박 전 장관에게 거액의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 및 진술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본보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장관측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기사 보도 전후의 언론보도 등

이 사건 기사 보도 전부터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 회장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업체들이 2000년경부터 2001년경 사이에 사업권 확보를 위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 국회의원,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월드컵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 동아일보는 2003. 4. 28.자 동아일보에 “월드컵 회장권 수십억 로비 … 의원, 전 장관 등 20여 명 수사”라는 제목으로 “...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를 검찰이 포착해 27일 전면 수사에 나섰다. (중략) 검찰은 또 당시 DJ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모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정부 투자기관 고위 인사 등에게 거액이 전달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검찰은 조만간 CPP코리아와 코오롱TNS 관련 인사 등을 소환 조사해 정관계에 전달된 정확한 금품 액수와 로비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SBS는 2003. 5. 21. ‘8시 뉴스’에서 “검찰, 박지원씨 금품수수 진술 확보”라는 제목으로 “...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회장사업업체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중략) 검찰은 최근 CPP코리아 김모 전 사장으로 부터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월드컵회장 사업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G&B월드 대표 심○○씨가 월드컵 홍보관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지난 2000년에서 2001년 1월 사이에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수 억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중략) 그러나 박 전 실장은 심○○씨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회장사업과 관련해 어떤 로비도 받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정점에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다고 말해 이미 박 전 실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빠르게 파악해 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방영하였으며, 중앙일보 2003. 5. 22.자, 경향신문 2003. 6. 12.자, 연합뉴스 2003. 6. 14.자, 문화일보 2003. 6. 14.자 등도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가 김○○ 관광협회중앙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을 당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고, 검찰은 김○○가 2000년 3월부터 2000년 7월까지 회장사업대행업체인 CPP코리아와 코오롱TNS월드측으로부터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받은 10억원 중 2억원씩을 구(舊)정권 실세 K씨와 P씨 등에게 건넸다는 ‘전언’ 진술을 확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각각 보도하였다.

라. 김○○에 대한 수사 경위

(1) 이 사건 기사에서 취재원으로 기재된 김△△는, 2000년경 2002년 월드컵회장사업권을 가진 CPP코리아의 대표이사였는데, 2002년 월드컵회장사업과 관련하여 CPP본사로부터 2000. 12. 20. 이전에는 총판계약(월드컵 회장이 들어간 제품의 독점판매권 설정계약)이나 OEM(월드컵 회장이 들어간 제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11월경부터 2000년 8월경까지 사이에 월드컵 회장사업의 제주총판권을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9억 여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되어, 2002. 9. 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이 법원 2002고합577, 2002고합822(병합)), 김△△가 그에 대해 항소하여 2003.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2003노2434, 그 판결에 대해 김△△가 상고를 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약 11개월만에 구금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 그와 같이 김△△는 구금상태를 면한 후 2003. 4.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당시에는 서울지방검찰청이었다. 이하, ‘서울지검’이라 한다)에서 2000년 당시 CPP코리아의 회장이었던 김○○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당시 김○○를 CPP코리아의 회장으로 영입한 이유가 김○○의 인맥을 이용하여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로비를 하여 월드컵 회장사업권을 유지하겠다는 목적이었다고, 자신이 김○○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김○○는 그 금품을 사용하여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월드컵회장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하였다는 것이었다(김△△는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김△△의 2003. 4. 29.자 진술서 말미에는 “제가 얘기해야겠지만 ... 모든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002년 10월 당시에도 여담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김△△가 김○○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앞서 본 김△△ 자신의 형사재판 과정 중 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에 검찰에 그와 유사한 내용을 진술하였고, 그것을 계기로 김△△가 구금상태에서 벗어나자 검찰이 김○○와 관련된 사안의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3) 김△△는 위와 같이 진술한 후 2003. 4. 29., 2003. 5. 23., 2003. 6. 2. 및 2003. 6. 13.의 각 검찰조사에서 “정치권 인사 등에 대해 로비를 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와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고 당시 관광협회중앙회장이었던 김○○에게 CPP코리아의 회장으로 취임하도록 부탁하였고, 김○○가 그 취임을 승낙한 후(2000. 3. 28. 취임하였다) 김△△ 자신에게 관광협회중앙회장으로 선출되도록(1999. 12. 28. 선출되었다) 도움을 준 원고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2억원을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0. 5. 20. 경 김○○에게 2억원을 건네주었고, 그 후 김○○가 자신에게 ‘김사장은 걱정말고 사업이나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등에 비추어 그 2억원이 원고에게 건네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김△△는 검찰에서 처음으로 진술할 때에는 원고와 관련된 부분을 진술하지 않았으나 2003. 5. 31. 처음으로 그와 관련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대해 2003. 6. 2.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4) 한편 김△△의 그와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은 2003. 6. 11. 김○○를 긴급체포하여 구속하였으나, 김○○는 2003. 6. 13. 김△△와의 대질신문 등에서 일관하여 김△△로부터 2000년 9월경에 급여 명목으로 23,956,700원을 교부받은 외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김○○에 대한 공소제기 및 그에 대한 재판결과

(1) 서울지검 소속 검사 박용호는 그와 같은 김△△의 진술을 근거로 2003. 7. 1.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에게 돈을 준 사람으로 보도된 김○○에 대해

“1999년 11월경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202 소재 신라호텔에서, 김△△로부터 월드컵조직위원회 등정·관계 및 체육계 등에 로비를 하여 CPP코리아의 월드컵회장사업권이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관공서 등예의 납품 등 월드컵회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명목상 CPP코리아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기존에 피고인이 인간관계를 맺어오던 각계의 고위공직자 등을 통해 로비를 함으로써 청탁 내용을 실현키로 마음먹고, 고위공직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년 3월경부터 2001년 12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함께 7억 5,000여 만원을 교부받았다(2000. 5. 20. 원고에게 건네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2억원 포함)”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03고단6122, 2003고단8532(병합)).

(2) 그러나 이 법원은 그와 같은 공소제기에 대해 2003. 12. 11. 가장 중요한 직접증거인 김△△의 검찰 및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해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03노11524호), 이 법원은 2004. 10. 5.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에 대해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04도6958호).

바. 원고에 대한 당시의 수사 상황 등

(1) 2003년 4월경부터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2003. 03. 15. 법률 제6864호)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이른바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당시에는 대북송금사건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하여 국가정보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등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의 핵심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거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언론에서는 그 사건의 가장 중심적 인물로 원고를 지목하고 있었으며, 특별검사도 조만간 원고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었고(원고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2003. 6. 16. 특별검사에 소환되어 2003. 6. 17. 긴급체포되었다),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북한에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자 원고를 비롯한 대북송금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수사결과에 관해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2) 한편 김△△의 그와 같은 진술이나 김○○의 그와 같은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로비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원고 등이 그에 관하여 실제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2.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용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실은 원고가 김○○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김○○가 검찰에서 관광협회중앙회장 임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원고에게 2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마치 원고가 김○○로부터 관광협회중앙회장에 임명되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2억원을 받은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성,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한편 언론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

적인 흐름, 기사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사건 기사의 경우,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동아일보의 제1면 우측 상단부분에 배치하면서 “박지원씨에 2억 줬다”라는 제목을 중간 제목보다도 훨씬 큰 활자로 표시하고 있고, 그 바로 밑에 “김○○씨 ‘관광협회장 임명 도움 대가’ 진술”이라는 중간 제목을 기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사 가운데에 원고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면서 본문 내용에는 원고가 김○○로부터 돈을 받은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검찰이 원고의 금품수수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원고를 수사할 예정인 것처럼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권노갑이 피고 동아일보사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돈을 받지 않았으며 김○○씨를 관광협회중앙회장이 되도록 한 사람은 박지원씨”라고 말했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본문에 원고가 “문화관광부 장관 재직 당시 김○○ 관광협회중앙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김회장이 ... 박 장관에게 총회결과를 보고하러 가면서 김△△ 전 CPP코리아 대표에게서 받은 2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의 배치, 제목과 중간 제목의 문구 및 크기, 원고의 사진 게재, 관련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를 읽는 대부분의 일반 독자들로서는 먼저 기사 제목에 의하여 원고의 범행사실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은 다음 본문 내용은 그냥 읽어 넘어가기가 쉽고, 본문 내용을 읽어보더라도 원고의 금품수수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단순히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보다는 원고가 김○○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대북송금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여론의 집중적 관심의 대상이었으므로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이 사건 기사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원고가 김○○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한편 이 사건 기사는 중간 제목으로 “김○○씨 관광협회장 임명 도움 대가 진술”이라고 게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사의 본문에는 김○○가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 아니라 김△△가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기사에서의 그와 같은 사실의 적시는 그 자체로 전직 공직자였던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내용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전직 고위 공직자였던 원고의 직무 청렴성 등에 대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은 물론 이 사건 기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서울지검 특수1부에 대한 취재와 다각적인 확인절차, 김△△ 등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인물에 대한 직접 확인 및 기타 주변 정황에 대한 검토 등 당시로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기사를 작성·보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제16대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 문화관광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원고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그 직무에 속하는 관광협회중앙회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김○○로부터 그 임명에 도움을 준 대가로 김○○로부터 2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기사는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원고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대다수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5, 을제7호증의 9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가 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00. 5. 20.경 김○○가 원고에게 인사하여야 한다면서 2억원을 준비하라고 하였고, 자신이 현금으로 2억원을 준비하여 김○○에게 주었는데, 그 후 김○○가 자신에게 ‘이제부터는 사업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였고, 또 그 후부터는 월드컵조직위원회의 CPP코리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으로 보아 김○○가 그 2억원을 원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김○○는 김△△의 그와 같은 진술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김△△가 본사에서의 자금지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의 자금을 들여 로비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원고가 김○○로부터의 금원수령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거나 입건, 기소되지 않았고 김△△가 김○○에게 교부했다는 돈 중 상당부분을 수표로 교부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의 김△△와 김○

○의 각 계좌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김△△로부터 김○○에게 전달되었다는 수표나 돈이 송금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점, 김△△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의 위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김○○로부터 2억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다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 10208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 기사와 같이 보도 내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인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별다른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그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보도에 앞서 더욱더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정도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동아일보사 소

속 기자인 피고 이□□, 이○○, 이△△ 등은 2003. 4. 25.경 김△△의 아버지(성명을 알 수 없다)로부터 월드컵회장 사업권 관련 수사에서 청와대 등 정치권 인사들, 특히 원고가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2003. 4. 27. 직접 김△△를 만나 김△△에 대한 서울지검 특수1부의 수사경위, 직접 관련된 정관계 로비 등을 취재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4. 28.자 동아일보에 원고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보도하였고, 그 후 서울지검의 수사경과를 지켜본 후 2003. 6. 1.경 및 2003. 6. 13. 김△△를 다시 취재한 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다만 피고들은 서울지검 특수1부 관계자들로부터도 김△△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김○○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취재원 보호를 위해 그 경위를 밝히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사 말미에 원고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대북송금사건 수사 등으로 인하여 원고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위한 직접 취재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김△△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하였는바(서울지검 특수1부의 관계자들로부터 확인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당시 월드컵 회장사업과 관련해서 원고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이미 피고 동아일보사 발행의 동아일보 및 다른 언론들에 의해 보도되었던 내용으로 보도가치의 측면에서 그다지 신속하게 보도할 필요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전인 2003. 4. 28.경 원고에 대한 그러한 의혹제기가 있었음에도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해 수사가 바로 진행되지 않아 김△△의 진술내용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김△△가 원고에게 2억원을 건네주기 위해 돈을 마련해 주었다는 김○○(그 당시 김○

○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였다)에 대해서 따로 취재하지 않은 사정, 이 사건 기사의 가장 중요한 취재원인 김△△ 자신이 월드컵 회장사업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있었고, 김△△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검찰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김○○와 관련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정(김△△가 김○○와 관련된 진술을 시작한 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월드컵 회장사업과 관련하여 김△△ 자신이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을 때로 보이는데, 김△△로서는 편취한 돈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님을 주장함으로써 형량의 감경을 피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여러 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편취금액의 지출내역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 이○○, 이△△, 이□□이 김△△로부터 그가 검찰에 원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면 김○○가 그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었을 것이며, 김△△의 검찰에서의 진술 그 자체도 진술을 할수록 로비 대상이 점점 확대됨은 물론 그 일관성도 없어졌던 사정, 그런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김○○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제목에서 “박지원씨에 2억 줬다”, “김○○씨 ‘관광협회장 임명 도움 대가’ 진술”이라는 제목과 “김○○가 당시 홍콩에서 열린 태평양 아시아관광협회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직후 박 장관에게 총회결과를 보고하러 가면서 김△△ 전 CP코리아 대표에게서 받은 2억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는 본문 내용 등에서 김○○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처럼 보도한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는 대북송금사건에 원고가 깊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 사건과 별개로 원고가 월

드컵 회장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일반 독자들이 쉽게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상황이었던 사정, 김○○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김△△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 사정 등 이 사건 기사의 취재경위, 취재원인 김△△의 진술내용 및 그 신빙성, 취재 당시 원고의 상황,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의 진술을 믿어 보도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작성·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원고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사의 위치와 내용 및 크기, 피고 동아일보사가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그에 대한 평가, 이 사건 기사와 유사한 내용이 이미 다른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3,000만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03. 7.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아울러 피고 동아일보사는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 판결 확정 후 첫 번째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제2면 우측 상단에 게재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제1면 우측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나, 앞서 본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면 우측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명한다), 피고 동아일보사가 그 정정보도문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그 의무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씩의 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상 군
판사 최 정 인
판사 강 재 원

〈별 지〉 정정보도문

본보 2003. 6. 14.자 “박지원씨에 2억 줬다”라는 제목과 “김○○씨 ‘관광협회장 임명 도움 대가’ 진술”이라는 중간 제목 이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관광협회중앙회장 임명에 도움을 준 대가로 김○○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정정보도문 글씨체 및 크기 : 명조체, 28급
본문 글씨체 및 크기 : 명조체, 14급 끝. □

3. 결론

판결 4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발행인이나 편집책임자가 편집책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기사의 작성·편집에 간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대외적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05. 1. 25.자 판결 (2003나82497)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

사)는 2005년 1월 25일 한나라당과 소속 현역 국회의원 이재오 씨가 오마이뉴스 편집자 겸 발행인 오○○ 씨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언론매체가 그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발행인이나 편집책임자가 불법행위자로서 그 보도로 인한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당연하고, 내부적으로 그에 대한 편집책임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구체적인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간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대외적인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사 작성 및 편집에 간여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 오○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언론이 더 넓은 표현의 자유영역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적인 인물이나 공공의 관심 사항에 관한 문제제기가 가지는 영향이나 결과를 고려하여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게 된 전제사실이나 취재원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피고들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나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같은 제보가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인식 아래 이 사건 보도를 하게 된 이상,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거나 그와 같이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오마이뉴스사가 주간 오마이뉴스 2002년 12월 3일자 제16, 17면, 인터넷 오마이뉴스 2002년 12월 4일자 『‘김○○ 테이프 조작 거짓증언’ 대가로 이재오 의원측에서 3,500만원 받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이 이재오 의원을 통하여 금원지급을 대가로 김○○ 씨의 조작진술을 청탁하고 실제로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자 원고들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1집, 251~263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3나8249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1. 한나라당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4-17

대표자 박 근 혜

2. 이 재 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봉 규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 윤 숙

피고, 항소인 : 1. 오 ○ ○

2. 김 ○

피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강

담당변호사 이 지 은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3. 11. 12. 선고

2002가합81643 판결

변 론 종 결 : 2004. 12. 21.

판 결 선 고 : 2005. 1. 25.

주 문 :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당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피고 오○○는, 자신이 이 사건 보도가 게재된 오마이뉴스 2002의 명목상 발행인 겸 편집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기사의 작성 및 편집에 간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언론매체가 그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발행인이나 편집책임자가 불법행위자로서 그 보도로 인한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당연하고, 내부적으로 그에 대한 편집책임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구체적인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간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대외적인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금○○의 제보(이하 금○○의 피고들에 대한 제보를 '2차 제보'라 한다)를 직접화법을 사용하여 여과 없이 인용하거나 그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논평을 게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반론도 지면의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이를 함께 보도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

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금○○의 2차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법으로 '원고 한 나라당이 원고 이재오를 통하여 금○○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금○○로 하여금 김○○과 함께 테이프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폭로하도록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대가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을 직접 대중에게 전달하거나 최소한 보도를 접하는 독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암시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에서 금○○의 2차 제보를 단순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면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내용을 전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가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논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기사 내용에 일부 반론 등을 함께 게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원고들은 김○○과 테이프를 조작하였다는 금○○의 당초의 제보(이하 '1차 제보'라 한다)가 여러 정황을 통하여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위제보 내용을 언론에 유출시켜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를 자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금○○의 2차 제보나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한나라당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언론 매체 종사자임을 자처하는 피고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자신들이 발행하는 주간지에 함부로 게재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금○○의 2차 제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보도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김○이 항공기 탑승자 명단을 확인하고 금○○의 동거녀인 이○○과 원고 이재오의 보좌관 및 원고 한나라당의 당직자를 통하여 원고 이재오와 금○○가 접촉하거나 만난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들로서는 금○○가 피고 김○과 접촉하여 2차 제보를 하기에 앞서 원고 한나라당에 김○○과 테이프를 조작하였다는 내용을 1차 제보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1차 제보 당시 원고 이재오를 비롯한 원고 한나라당의 당직자들이 금○○와 접촉하여 제보사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은 원고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므로, 원고 이재오가 금○○를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원고 이재오가 금○○를 매수하여 테이프 조작에 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도록 하였다는 2차 제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금○○는 제보 이전에 있었던 김○○의 기자회견이나 관련 병역

비리 수사과정 등에서 전혀 언급되거나 관련자료지목된 적이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내용을 여기저기에 제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보한 이후에도 입장을 바꿔 기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등 2차 제보 내용을 선뜻 신뢰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었던 반면 그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발생할지 모르는 결과의 증대성을 고려하여, 이를 취재하는 기자라면 과연 금○○가 그와 같은 제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제보 내용 자체의 모순은 없는지, 제보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사실확인 작업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사를 작성한 피고 김○ 스스로가 이 사건 보도 내용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금○○가 허위제보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2차 제보 내용을 기사의 큰 제목 등으로 부각시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를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보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보도를 통하여 당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에서 원고 한나라당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겠다는 현실적 악의가 존재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결국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그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는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 사항에 관하여는 언론

에 의한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또한 완화되어야 하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언론이 더 넓은 표현의 자유영역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적인 인물이나 공공의 관심 사항에 관한 문제제기가 가지는 영향이나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게 된 전제사실이나 취재원에 대한 보다 고도의 사실확인 작업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금○○의 2차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나 노력을 하지 않고 도리어 그와 같은 제보가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인 인식 아래 이 사건 보도를 하게 된 이상, 이 사건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의 게재 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2. 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3. 11.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상 훈
 판사 김 대 응
 판사 박 인 식

